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호(기소), 이상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손병희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26. 17:32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대체리 329-2에 있는 대체사거리를 B 마을회관 방면에서 용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최고속도의 80%에 해당하는 시속 40킬로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3킬로미터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은풍면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국적 캄보디아, 남, 5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로 하여 금 2025. 3. 6.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추손상¹⁾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혐의차량 진행방향도로의 속도제한 규제표지판(4매), EDR 보고서,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외상성 호흡부전"은 오기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_____